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보건위생과】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출산급부 통합처리서비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생아가 쌍생아인 경우 태어난 순위에 따라 개별 지원함을 명확하게 규정 함(안 제3조)

나.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4조)

다.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의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모자보건법」 제3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

6. 예산수반 사항 : 세부사항 덧붙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변경전 대상자수	145	167	189	196	203	900
변경후 대상자수	145	184	206	210	214	959
대상자수 증감	**0**	**17**	**17**	**14**	**11**	**59**
변경전 예산액	160,000	184,000	208,000	217,000	226,000	995,000
변경후 예산액	160,000	204,000	228,000	233,000	238,000	1,063,000
예산 증감	**0**	**20,000**	**20,000**	**16,000**	**12,000**	**68,000**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6년 6월 10일 ~ 6월 30일(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나. 규제개혁관련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하남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시”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지원하되,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를 **“신생아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인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보건위생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보건위생과장 이주윤
	팀장 직위·성명	지역보건팀장 김선영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선영 (790-5261)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table>
<tr><td>보호자</td><td>부 또는 모</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3">신생아</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보호자와 관계</td><td>자녀 중 째</td><td>성 별</td><td></td></tr>
<tr><td>분만 의료기관</td><td></td><td>분만일자</td><td>년 월 일</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자택</td><td></td><td>이동전화</td><td></td></tr>
<tr><td>입금계좌번호</td><td colspan="2">은행명( )</td><td>계좌번호( )</td><td>예금주( )</td></tr>
<tr><td colspan="5">「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하 남 시 장 귀하</td></tr>
<tr><td colspan="5">【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td></tr>
<tr><td>확인사항</td><td colspan="4">○ 주 소 :
○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td></tr>
<tr><td colspan="5">년 월 일
조 사 자 : (인)
확 인 자 : ○ ○ 동 장 (직인)</td></tr>
</table>

※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 **제7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 ---------- ---------- ----------.	제1조(목적) ---------- ----------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하남시**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 **시**------- ---------- ---------- ----------.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 ----------.
제3조(지원기준) ---------- ---------- ---------- **지원하되,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 ---------- ----------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시에**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③ 신생아가 ---------- ---------- ---------- ----------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인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출산급부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해당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 예산수반사항 》

□ 재원조달 계획

○ 100% 시 자체예산으로 재원 조달

○ 총괄 예산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비고
변경전 대상자 수	145	167	189	196	203	900	
변경후 대상자 수	145	184	206	210	214	959	
대상자수 증 감	0	17	17	14	11	59	
변경전 예산액	160,000	184,000	208,000	217,000	226,000	995,000	
변경후 예산액	160,000	204,000	228,000	233,000	238,000	1,063,000	
예산증감	0	20,000	20,000	16,000	12,000	68,000	

○ 연도별 사업예산

2016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단위 : 천원)

출생 순위	변경이전		변경이후		예산증감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셋째아	130	130,000	130	130,000	0
넷째아 이상	15	30,000	15	30,000	0
계	145	160,000	145	160,000	0

2017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단위 : 천원)

출생 순위	변경이전		변경이후		예산증감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셋째아	150	150,000	164	164,000	14,000
넷째아 이상	17	34,000	20	40,000	6,000
계	167	184,000	184	204,000	20,000

2018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단위 : 천원)

출생 순위	변경이전		변경이후		예산증감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셋째아	170	170,000	184	184,000	14,000
넷째아 이상	19	38,000	22	44,000	6,000
계	189	208,000	206	228,000	20,000

2019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단위 : 천원)

출생 순위	변경이전		변경이후		예산증감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셋째아	175	175,000	187	187,000	12,000
넷째아 이상	21	42,000	23	46,000	4,000
계	196	217,000	210	233,000	16,000

2020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단위 : 천원)

출생 순위	변경이전		변경이후		예산증감
	대상자 수	금액	대상자 수	금액	
셋째아	180	180,000	190	190,000	10,000
넷째아 이상	23	46,000	24	48,000	2,000
계	203	226,000	214	238,000	12,000